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506
----------	-------

발의연월일 : 2026. 3. 16.

발 의 자 : 김주영 · 박균택 · 김태선
홍기원 · 문정복 · 강득구
정태호 · 박민규 · 서영교
박상혁 · 최혁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은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하거나 허가 받은 재활용업자 등을 통해서 처리해야 하며, 폐기물의 불법·방치 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수집·운반, 보관, 처분, 재활용 등 처리 전과정에 엄격한 기준을 준수해야 함.

그러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양질의 원료로 순환이용할 수 있는 부산물을 동일한 산업단지에 소재한 재활용업체나 사업장 자체에서 순환이용하는 경우 외부 이동이 적고, 순환이용 후 유가성이 높아 처리 과정에서 불법·방치 우려가 적음에도 폐기물 관련 규제 준수를 위해 불필요한 행정절차와 비용이 발생하여 순환경제 전환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함.

이에 산업단지 및 개별 사업장 단위를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구역내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정해진 절차와 방법을 준

수하여 환경 안전성을 담보하며 순환이용하는 경우 폐기물 규제를 면제함으로써 폐기물의 외부 이동 없이 제한된 구역에서 양질의 순환이용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신설 등).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이란 산업단지 또는 사업장 내에서 부산물의 이동을 최소화하고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이 제36조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10.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11. “부산물”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물건을 말한다.

제44조 앞의 “제7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50조 앞의 “제8장 벌칙”을 삭제한다.

제52조를 제56조로 하고, 제48조를 제52조로 하며, 제44조를 제48조로 한다.

제49조를 제53조로 하고, 제45조를 제49조로 한다.

제50조를 제54조로 하고, 제46조를 제50조로 한다.

제51조를 제55조로 하고, 제47조를 제51조로 하며, 제36조부터 제43조까지를 각각 제40조부터 제47조까지로 하고,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단지 또는 사업장을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산업단지의 경우 도로, 하천 등을 경계로 산업단지가 구분되었더라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하나의 규제특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산업단지 또는 사업장 내에 부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는 기업 또는 시설이 있는 경우
2. 산업단지 또는 사업장 내에 부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는 기업의 입주수요를 확보하거나 시설 설치가 가능한 경우

②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 지정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자(이하 “규제특례구역 신청자”라 한다)가 할 수 있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관리기관
2. 「폐기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단일 사업장 내에서 부산물을 순환이용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③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의 신청 및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의 지정 해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6조에 따라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의 지정을 받은 산업단지 또는 사업장이 제36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규제특례구역 신청자가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의 지정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의 지정을 받은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정이 해제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8조(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의 특례 적용)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받은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 내의 사업장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절차와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부산물을 순환이용 하는 경우 그 부산물은 폐기물로 보지 아니한다.

1. 부산물을 배출하거나 순환이용하려는 자는 부산물을 배출, 순환이용하기 전에 부산물의 종류, 순환이용의 방법, 위탁·수탁 업체 정보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할 것(신고한 사항 중 주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동일한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 내에서 순환이용 할 것
3. 순환이용하는 부산물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아니할 것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변경신고 수리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신고한 자는 매년 부산물 배출 및 순환이용 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고, 변경신고, 실적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지원센터의 지정·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1.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2. 제36조에 따른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 지정 및 관리 지원
3. 제38조에 따른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 내 특례 신고 사업장 관리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지원센터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0조(종전의 제36조)제9항 중 “제47조”를 “제51조”로 한다.

제42조(중전의 제38조)제2항제3호 중 “제36조제9항”을 “제40조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제37조제1호”를 “제41조제1호”로 한다.

제43조(중전의 제39조)제1항 중 “순환자원 등”을 “순환자원,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 내 부산물 순환이용 등”으로 한다.

제45조(중전의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4조”를 “제36조에 따라 지정받은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 내 사업자, 제48조”로 한다.

제48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보칙

제49조(중전의 제45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8호(중전의 제7호) 중 “제36조”를 “제40조”로 한다.

7.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 내 신고한 자
제50조(중전의 제46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37조제1항에 따른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의 지정 해제
제52조(중전의 제48조) 중 “제39조제1항 또는 제47조제2항”을 “제43조제1항 또는 제51조제2항”으로 한다.

제53조(중전의 제49조)제1항 중 “제36조”를 “제40조”로 한다.

제54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 벌칙

제55조(종전의 제51조) 본문 중 “제50조”를 “제54조”로 한다.

제56조(종전의 제5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제36조제10항”을 “제40조제10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제45조제1항”을 “제49조제1항”으로 한다.

1. 제38조제4항에 따른 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제40호 중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50조부터 제52조”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54조부터 제56조”로 한다.

②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9호의2 중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6조”를 “「순

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40조”로 한다.

제47조제1항제6호의2 중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7조”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41조”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8. (생략)</p> <p><u><신설></u></p> <p><u><신설></u></p> <p><u><신설></u></p> <p><u><신설></u></p>	<p>제2조(정의) ----- -----.</p> <p>1. ~ 8. (현행과 같음)</p> <p>9. <u>“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이란 산업단지 또는 사업장 내에서 부산물의 이동을 최소화하고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36조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u></p> <p>10. <u>“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u></p> <p>11. <u>“부산물”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물건을 말한다.</u></p> <p><u>제36조(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단지 또는 사업장을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산업단지</u></p>

의 경우 도로, 하천 등을 경계로 산업단지가 구분되었더라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하나의 규제특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산업단지 또는 사업장 내에 부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는 기업 또는 시설이 있는 경우

2. 산업단지 또는 사업장 내에 부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는 기업의 입주수요를 확보하거나 시설 설치가 가능한 경우

②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 지정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자(이하 “규제특례구역 신청자”라 한다)가 할 수 있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관리기관

2. 「폐기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단일 사업장 내에서 부산물을 순환이용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③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의 신청 및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신 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의 지정 해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6조에 따라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의 지정을 받은 산업단지 또는 사업장이 제36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규제특례구역 신청자가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의 지정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의 지정을 받은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정이 해제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 설>

제38조(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의 특례 적용)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받은 순환경제 규제특례구

역 내의 사업장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절차와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부산물을 순환이용 하는 경우 그 부산물은 폐기물로 보지 아니한다.

1. 부산물을 배출하거나 순환이용하려는 자는 부산물을 배출, 순환이용하기 전에 부산물의 종류, 순환이용의 방법, 위탁·수탁 업체정보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할 것(신고한 사항 중 주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동일한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 내에서 순환이용 할 것
 3. 순환이용하는 부산물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아니할 것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변경신고 수리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

<신 설>

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신고한 자는 매년 부산물 배출 및 순환이용 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고, 변경신고, 실적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지원센터의 지정·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1.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 제도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2. 제36조에 따른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 지정 및 관리 지원

① (생략)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략)

3.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 중 제36조제9항에 따른 교부금

4. ~ 8. (생략)

③ 특별회계의 세출(歲出)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

2. (생략)

④ (생략)

제39조(순환자원정보센터의 설치·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순환원료, 순환자원 등의 정보를 관리·제공하는 순환자원정보센터(이하 “순환자원정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거나 관계 전문기관에 그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생략)

제40조(순환경제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2. (현행과 같음)

3. -----
-- 제40조제9항-----
--

4. ~ 8. (현행과 같음)

③ -----
-----.

1. 제41조제1호-----

2.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43조(순환자원정보센터의 설치·운영) ① -----

----- 순환자원,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 내 부산물 순환이용 등-----

-----.

② (현행과 같음)

제44조(순환경제정보체계의 구축·운영) (현행 제40조와 같음)

제41조(재정적·기술적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제44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 6. (생략)

②·③ (생략)

제42조·제43조 (생략)

제7장 보칙

<신설>

제44조(사업자단체의 설립) (생략)

제45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나 사업장, 「관

제45조(재정적·기술적 지원 등)

① -----

----- 제36조에 따라 지정받은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 내 사업자, 제48조-----

-----.

1. ~ 6.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46조·제47조 (현행 제42조 및 제43조와 같음)

<삭제>

제7장 보칙

제48조(사업자단체의 설립) (현행 제44조와 같음)

제49조(보고 및 검사 등) ① -----

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 6. (생략)

<신설>

7. 제36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징수 대상자

②·③ (생략)

제46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 5. (생략)

<신설>

제4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생략)

제4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의제) 제9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25조제1항, 제39조제1항 또는 제47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

-----.

1. ~ 6. (현행과 같음)

7.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 내 신고한 자

8. 제40조-----

②·③ (현행과 같음)

제50조(청문) -----

-----.

1. ~ 5. (현행과 같음)

6. 제37조제1항에 따른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의 지정 해제

제5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현행 제47조와 같음)

제5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의제) -----
----- 제43조제1항 또는 제51조제2항-----

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9조(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① 제36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은 2028년 1월 1일 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② (생략)

제8장 벌칙

<신설>

제50조(벌칙) (생략)

제5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제53조(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① 제40조-----

-----.

② (현행과 같음)

<삭제>

제8장 벌칙

제54조(벌칙) (현행 제50조와 같음)

제55조(양벌규정) -----

----- 제54조-----

-----.

-----.

제5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1. 제36조제10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2. 제45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같은 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③ (생략)

-----.

1. 제38조제4항에 따른 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2. 제40조제10항-----

3. 제49조제1항-----

③ (현행과 같음)